

◇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개정 ◇

- ❖ 제천·밀양화재 관련 비상구 등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대두
* (도지사 지시) 많은 영역에 신고포상제 도입 검토('18. 8. 23.), 비상구 신고포상 확대 추진('18. 9. 14.)
- ❖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개정(시행 : '20. 1. 13.)

- 시행시기 : 2020. 1. 13. 시행
- 조례개정 주요사항

| 구 분 | 현 행 | 개 정 |
|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신고대상 | - 다중이용업소 - 판매시설(대규모점포 포함), 복합건물 - 운수·숙박, 근린생활, 문화집회, 의료, 노유자, 위락시설 | - 변동없음 |
| 지급방법 | - 현금 - 포상금 상한액 없음 | - 지역화폐(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) - 포상금 상한액 없음 |
| 신고자격 | -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 | - 누구나(지역제한 삭제) |

- 신고방법 : 수원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방문, 우편, FAX,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비상구 신고센터
- 제출서류 : 불법행위 신청서 및 증빙자료(현장사진, 동영상 등)
-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처리 절차

① 신고 → ② 접수(신청서 및 증빙자료) → ③ 보완요청 또는 현지확인 → ④ 포상심의회 → ⑤ 처리결과 통지 → ⑥ 지급(15일 이내)

- 포상금 지급
 - 근거 : 『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』 운영 조례
 - 지급방법 : 지역화폐지급(포상금 상한액 삭제)
 - 지급 : 포상심의 및 사실 확인 후 15일 이내 지급

수 원 소 방 서 장